

31.>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_____)				
담당자	성명(작성자)		직위		전화번호

납부의무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input type="checkbox"/>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감면대상 여부	<input type="checkbox"/> 자가 매립 후 재활용, <input type="checkbox"/> 소각열에너지회수, <input type="checkbox"/>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input type="checkbox"/> 지정폐기물처분, <input type="checkbox"/> 도서지역폐기물처분, <input type="checkbox"/> 재난폐기물처분
연간 매출액	원 총폐기물 처분량 _____ kg

신고내용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매립				[]	[]				
				[]	[]				
				[]	[]				
총신고금액(원)									

구분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폐기물 유형 (1~4)	처분방법		폐기물 처분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납부금액 (원)
				자가	위탁				
폐기물 소각				[]	[]				
				[]	[]				
				[]	[]				
총신고금액(원)									

자가 매립 후 3년 이후 미재활용량

폐기물 종류	폐기물 분류번호 (□□-□□-□□)	매립량(kg) (매립연도)	연도별 재활용량(kg)		3년 이후 미재활용량 (kg)	요율 (원/kg)	산정 지수	부과율	납부금액 (원)
			해당 연도	1년차					
								50%	

폐기물처분부담금 총신고금액(원)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 귀하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폐기물 유형,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소각·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1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p>수수료 없음</p>
<p>담당 공무원 등 확인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법인(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 법인사업자는 법인등록번호만을 적고, 개인사업자는 주민(외국인)등록번호만을 적습니다.
- 업종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납부자 구분 및 감면대상은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감면대상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 중 해당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를 작성 후 첨부합니다)
- 감면대상 해당 여부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5를 참고하며, 감면신청서는 감면대상 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 총폐기물 처분량은 소각 또는 매립한 폐기물 양의 합계를 적습니다.
- 폐기물 종류 및 분류번호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적습니다.
- 폐기물 유형란은 1.생활폐기물, 2. 사업장폐기물 불연성, 3. 사업장폐기물 가연성, 4. 건설폐기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숫자로 적습니다.
 - ※ 사업장폐기물의 불연성과 가연성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별표 6의 비교란 참조
- 산정지수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연도의 산정지수를 적습니다.
- 납부금액란은 폐기물처분량에 해당 효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 자가 매립 후 3년 이내 미재활용량에 대한 납부금액란은 3년 이후 미재활용량에 해당 효율과 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의 50%를 적습니다.